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문위원 노형우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1년 4월 13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4월 16일

3. 제안이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전입하는 전입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음.
- 안 제2조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금액을 충청북도의 재정여건과 소방의 소요예산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최근 4년간 정책사업비 전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년평균
전 입 금	9,355	11,905	1,231	20	5,628
보 통 세	839,999	1,027,688	1,189,926	1,164,724	1,055,584
전입비율	1,114%	1.158%	0.103%	0.002%	0,594%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1. 3. 5.~'21. 3. 25.)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소방 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전입금액의 규모를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함.